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환경부 검토의견과 발의 법안 비교

- 설악산국립공원에 이어, 해상국립공원도 포기 : 환경부 의지의 문제이거나 능력의 문제

2015. 10. 6

- 지난 9월 8일 정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781)을 발의 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원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을 접수하였음.
- 이법은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를 환경부가 불법과 왜곡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국립공원, 국립공원위원회등의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무력화 하고 난개발을 가속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보호구역 규제완화의 일환이 될 것임.

개정안	환경부 검토의견		발의 법안
	환경부 수정안	환경부 의견	
제28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경관을 활용하여 관광 및 휴양거점을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안권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경관을 활용하여 관광 및 휴양거점을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안권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자연공원은 핵심적인 보호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부터 훼손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임 - 자연공원 구역 내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공원을 훼손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고, 지자체로 하여금 자연공	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

<p>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본다). 다만, 제12조제2항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본다). <삭제></p>	<p>원 내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자연공원 지정의 근본적인 취지와 충돌</p>	<p>회(「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를 말한다) 심의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같음한다.</p>
<p>제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구역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p>	<p>제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좌 동</p>	<p>○ 또한, 구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시에 자연공원 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에 한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둔 것은 이 법의 취지가 해안권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자연공원은 엄격히 보존해야한다는 것임</p> <p>- 따라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가능하게 하고,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 제한을 배제하는 것은 이 법 제정시의 부처간 및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것임</p>	<p>⑥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원구역에서의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다만,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결정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구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삭제></p>		
<p>제28조의4(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략)</p>	<p>제28조의4(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② (좌동)</p>	<p>○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수도 시설의 신설·증설 비용,</p>	<p>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해양관광</p>

<p>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 ----- ----- -----, --, <u>다음 각호의 부담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수도권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 	<p>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생태계 훼손 보전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시설의 신·증설이나, 유지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담금으로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p>	<p>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p>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p> <p>③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p>
---	--	--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지역 내에 ‘해양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원의 지정 및 보전

의 목적과 상관없는 난개발 사업이 전문적 검토 없이 행정적 편의에 따른 추진 될 수 있다는 것,

-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되고 나서는 대상 지역이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이었다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과 관리 내용이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는 점,
- 또한,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국립공원등 공익을 위해 개발을 억제하고 보전 관리하던 보호구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개발을 허용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토지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목적을 포기하고 민간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이 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힘.